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 [안]



목 차

제1장. 기금운용계획 총괄	1
제2장.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2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7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9
○ 재난관리기금	53
○ 고향사랑기금	71
○ 중소기업육성기금	87
○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3
○ 양성평등기금	115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29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143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59
○ 옥외광고발전기금	173
○ 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185
○ 농업발전기금	199
○ 식품진흥기금	213

제1장 기금운용계획 총괄

1. 기금 개요

가. 운용방침

- 자금 운용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 사업비 집행을 제고 노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나.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2020	기금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운영의 안정성 도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획예산과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안전담당관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002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숙소 제공, 관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출자금 지급	○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업지원과
안식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14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령사회정책과
양성평등기금	2000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과 권리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가족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주변마을 지원기금	200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0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징수와 관리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10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 향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과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002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과
농업발전기금	2002	농업인 경쟁력 확보 및 소득 향상	○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업정책과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및 식품 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 식품위생법 제89조 ○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의약과

※ 지역산업육성기금: 2025년도 말 폐지 예정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33,592,631	2,588,948	168,900	-	-	-	121,736,368	3,999,676	2,983,103	2,115,6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 정)	110,232,844	-	-	-	-	-	104,071,734	3,999,676	2,161,43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2,500	-	-	-	-	-	100,000	-	2,500	-
재 난 관 리 기 금	8,129,194	2,118,948	1,800	-	-	-	5,796,946	-	211,500	-
고 향 사 랑 기 금	1,275,850	-	-	-	-	-	623,190	-	2,660	65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788,279	-	-	-	-	-	2,387,979	-	72,000	1,328,300
안 식 원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491,393	150,000	-	-	-	-	327,593	-	13,800	-
양 성 평 등 기 금	57,180	-	-	-	-	-	31,930	-	25,250	-
음 식 물 류 폐 기 물 자 원 화 시 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427,481	60,000	-	-	-	-	299,863	-	9,838	57,780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지 역 주 변 마 을 지 원 기 금	1,145,247	260,000	-	-	-	-	834,516	-	21,175	29,556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기 금	3,960,260	-	-	-	-	-	3,737,883	-	222,377	-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505,993	-	-	-	-	-	495,993	-	10,000	-
공 용 공 공 용 의 청 사 건 립 기 금	1,104,851	-	-	-	-	-	1,103,968	-	883	-
농 업 발 전 기 금	1,973,593	-	110,000	-	-	-	1,636,307	-	227,286	-
식 품 진 흥 기 금	397,966	-	57,100	-	-	-	288,466	-	2,400	50,00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전출금	기타 지출
합 계	133,592,631	7,036,287	200,000	300,000	-	13,555,850	82,568,738	-	27,311,756	2,62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 정)	110,232,844	-	-	-	-	9,600,000	73,321,088	-	27,311,756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2,500	-	-	-	-	-	2,500	-	-	100,000	-
재 난 관 리 기 금	8,129,194	1,653,400	-	300,000	-	-	6,175,794	-	-	-	-
고 향 사 랑 기 금	1,275,850	100,000	-	-	-	1,075,850	100,000	-	-	-	-
중소기업육성기금	3,788,279	2,286,550	200,000	-	-	1,200,000	101,729	-	-	-	-
안 식 원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491,393	189,600	-	-	-	280,000	21,793	-	-	-	-
양 성 평 등 기 금	57,180	54,000	-	-	-	-	3,180	-	-	-	-
음 식 유품 폐 기 물 자 원 화 시 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427,481	152,700	-	-	-	-	274,781	-	-	-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지 역 주 변 마 을 지 원 기 금	1,145,247	517,250	-	-	-	-	627,997	-	-	-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기 금	3,960,260	1,050	-	-	-	-	1,439,210	-	-	2,520,000	-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505,993	504,240	-	-	-	-	1,753	-	-	-	-
공 용 공 공 용 의 청 사 건 립 기 금	1,104,851	859,000	-	-	-	-	245,851	-	-	-	-
농 업 발 전 기 금	1,973,593	620,117	-	-	-	1,200,000	153,476	-	-	-	-
식 품 진 흥 기 금	397,966	98,380	-	-	-	200,000	99,586	-	-	-	-

3. 기금조성 규모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현재액 ^㉑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현재액 ^㉒ = ^㉑ + ^㉓ - ^㉔	증 감 ^㉒ - ^㉑ - ^㉓
		수입 ^㉓	지출 ^㉔		
합 계	138,893,369	11,856,263	37,468,043	113,281,589	△25,611,7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 정)	108,071,734	6,161,110	27,311,756	86,921,088	△21,150,64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0,000	2,500	100,000	2,500	△97,500
재 난 관 리 기 금	5,796,946	2,332,248	1,953,400	6,175,794	378,848
고 향 사 랑 기 금	1,073,190	652,660	100,000	1,625,850	552,66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3,587,979	1,400,300	2,486,550	2,501,729	△1,086,250
안 식 원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327,593	163,800	189,600	301,793	△25,800
양 성 평 등 기 금	1,038,931	25,250	54,000	1,010,181	△28,750
음 식 유품 류 폐 기 물 자 원 화 시 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299,863	127,618	152,700	274,781	△25,082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지 역 주 변 마 을 지 원 기 금	834,516	310,731	517,250	627,997	△206,519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기 금	8,737,883	222,377	2,521,050	6,439,210	△2,298,673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495,993	10,000	504,240	1,753	△494,240
공 용 공 공 용 의 청 사 건 립 기 금	1,103,968	883	859,000	245,851	△858,117
농 업 발 전 기 금	7,136,307	337,286	620,117	6,853,476	△282,831
식 품 진 흥 기 금	288,466	109,500	98,380	299,586	11,120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6년도 말 조성액 ^㉔	융자금 미회수채권 ^㉕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㉖	총 조성규모 $\text{㉔}=\text{㉔}+\text{㉕}-\text{㉖}$
합계	113,281,589	-	-	113,281,5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6,921,088	-	-	86,921,0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500	-	-	2,500
재난관리기금	6,175,794	-	-	6,175,794
고향사랑기금	1,625,850	-	-	1,625,850
중소기업육성기금	2,501,729	-	-	2,501,729
안식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1,793	-	-	301,793
양성평등기금	1,010,181	-	-	1,010,18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74,781	-	-	274,7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주변마을 지원기금	627,997	-	-	627,99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6,439,210	-	-	6,439,210
옥외광고발전기금	1,753	-	-	1,753
공용공공의 청사건립기금	245,851	-	-	245,851
농업발전기금	6,853,476	-	-	6,853,476
식품진흥기금	299,586	-	-	299,586

4. 타 회계 예탁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명	2025년도 말 통합계정 예탁금㉔	2026년도 통합계정 예탁금㉕	2026년도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㉖	총 예탁규모 ㉗=㉔+㉕-㉖
합 계	86,459,945	43,826	23,072,700	63,431,071
일 반 회 계	14,330,000	-	14,330,000	-
기 타 특 별 회 계	4,208,090	43,826	1,053,431	3,198,485
산업단지특별회계	-	-	-	-
수질개선특별회계	777,881	-	777,000	88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0,000	-	-	10,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000	-	-	1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1,431	-	111,431	-
자활기금특별회계	2,997,610	-	165,000	2,832,610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89,414	-	-	89,414
교통사업특별회계	-	-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1,754	43,826	-	255,580
공기업특별회계	67,921,855	-	7,689,269	60,232,58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1,492,199	-	-	21,492,19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00,000	-	-	1,50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929,656	-	7,689,269	37,240,38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5. 7. 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 12. 31.>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용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용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용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12. 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1.>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⑦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7. 24., 2019. 12. 31., 2021. 12. 7.>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 12.>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법률 제16856호(2019. 12. 31.)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문개정 2011. 5. 30.]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3. 6. 9.>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

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부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법률 제18545호(2021. 12. 7.)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

[제목개정 2015. 12. 10.]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10.>

1. 연도별 기금구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 가. 수입계획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지출
 - 가. 지출계획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지출계획현액
 - 라. 지출액
 - 마. 다음 연도 이월액
 -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 [본조신설 2015. 12. 10.]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3. 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 [본조신설 2015. 12. 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2. 31.>

[전문개정 2015. 12. 10.]

제9조(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 삭제 <2010. 2. 8.>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3. 지방재정·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2조(전문기관) ① 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1. 12. 31.>

② 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0. 2. 25.,

2021. 12. 31.>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2021.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②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3. 12., 2020. 2. 25.>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②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③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 2. 8.]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2. 25.>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2. 25.>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용자관리계정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2021. 12. 31.>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0., 2020. 2. 25.>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의4(용자관리계정의 재원) 용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0., 2020. 2. 25.>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용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 2. 8.]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0. 2. 25.]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 2. 8.>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8.>

[제목개정 2010. 2. 8.]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할 수 있으며, 용자를 하는 경우에는 용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용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용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용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용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16조(발전기금예치금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 2. 8.]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목개정 2010. 2. 8.]

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행정, 재정, 경제, 세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행정등 분야”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행정등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인력을 1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행정등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5년 이상 또는 30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1. 시·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1. 시·군·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제1항제2호 후단의 추천권자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자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12. 31.]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12. 31.]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는 “시·도 및 시·군·구”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12. 31.]

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과의 적합성
 2. 지역의 주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과의 관계
 4. 사업추진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6.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7.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에 효율적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협약 기간
 2. 사업의 주관부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역할

3. 사업의 투자 분담

4. 사업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5. 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그 밖에 공동투자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부칙 <제33621호, 2023. 7.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전단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명 중 4명”을 “9명 중 3명”으로 한다.

별표 제138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2장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획예산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설치목적 : 기금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운영의 안정성 도모
- (3) 설치년도 : 202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 운영의 안정성 도모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긴급한 사업에 대한 자금용자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㉑ + ㉓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108,071,734	6,161,110	27,311,756	△21,150,646	86,921,088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㉑=㉒+㉓-㉔
86,921,088	0	0	86,921,088

- (2) 재원조성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예수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3) 지원기준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 (4) 지원대상 : 개별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10,232,844	102,803,661	7,429,183	합 계	110,232,844	102,803,661	7,429,183
전 입 금	0	0	0	비용자성사업비	0	0	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9,600,000	0	9,600,000
예 치 금 회 수	104,071,734	100,301,272	3,770,462	예 치 금	73,321,088	82,261,830	△8,940,742
예 수 금	3,999,676	378,389	3,621,287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161,434	2,124,000	37,434	예수금원리금상환	27,311,756	20,541,831	6,769,925
기 타 수 입	0	0	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081,434	2,004,000	77,434	
210 경상적세외수입	2,081,434	2,004,000	77,434	
216 이자수입	2,081,434	2,004,000	77,43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81,434	2,004,000	77,434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기금) 278,852,000원 = 278,852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특별회계) 1,468,848,000원 = 1,468,848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일반회계) 333,734,000원 = 333,734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8,151,410	100,799,661	7,351,749	
710 보전수입등	104,071,734	100,301,272	3,770,462	
714 예치금회수	104,071,734	100,301,272	3,770,462	
714-01 예치금회수	104,071,734	100,301,272	3,770,462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기금) 13,942,630,000원 = 13,942,630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특별회계) 73,442,403,000원 = 73,442,403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일반회계) 16,686,701,000원 = 16,686,701
720 내부거래	4,079,676	498,389	3,581,287	
722 예탁금및예수금	4,079,676	498,389	3,581,287	
722-01 예수금수입	3,999,676	378,389	3,621,287	
				○고향사랑기금 1,075,850,000원 = 1,075,850 ○중소기업육성기금 1,200,000,000원 = 1,200,000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80,000,000원 = 280,000 ○농업발전기금 1,200,000,000원 = 1,200,000 ○식품진흥기금 200,000,000원 = 200,000

(단위:천원)

장 · 관 · 항 ·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3,826,000원 = 43,826
722-04 예탁금이자수입	80,000	120,000	△40,000	
				○일반회계 80,000,000원 = 80,000
수 입 합 계	110,232,844	102,803,661	7,429,183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기획예산과	110,232,844	102,803,661	7,429,183
재정·금융	110,232,844	102,803,661	7,429,183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10,232,844	102,803,661	7,429,183
내부거래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6,911,756	20,541,831	16,369,9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기금)	368,926	1,190,611	△821,685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368,926	1,190,611	△821,685
02 예수금이자상환	368,926	390,611	△21,685
○양성평등기금	25,000,000원 = 25,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25,000,000원 = 125,000		
○농업발전기금	218,926,000원 = 218,9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특별회계)	12,812,830	19,351,220	△6,538,390
704 예탁금	2,800,000	0	2,800,000
01 예탁금	2,800,000	0	2,800,000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2,800,000,000원 = 2,800,00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10,012,830	19,351,220	△9,338,390
01 예수금원리금상환	8,735,700	18,120,220	△9,384,5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1,431,000원 = 111,431		
○자활기금특별회계	165,000,000원 = 16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770,000,000원 = 77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89,269,000원 = 7,689,269		
02 예수금이자상환	1,277,130	1,231,000	46,1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0,000원 = 3,000		
○자활기금특별회계	70,000,000원 = 70,0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130,000원 = 4,13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00,000,000원 = 1,2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일반회계)	23,730,000	0	23,730,000
704 예탁금	6,800,000	0	6,800,000
01 예탁금	6,800,000	0	6,800,000
○일반회계 예탁금	6,800,000,000원 = 6,800,000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16,930,000	0	16,930,000
01 예수금원리금상환	14,330,000	0	14,330,000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일반회계	14,330,000,000원 = 14,330,000			
02 예수금이자상환	2,600,000	2,600,000	0	2,600,000
○일반회계	2,600,000,000원 = 2,600,000			
보전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73,321,088	82,261,830	△8,940,7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기금)		17,808,406	12,541,414	5,266,992
602 예치금		17,808,406	12,541,414	5,266,992
01 일반예치금	17,808,406	17,808,406	12,541,414	5,266,992
○2026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기금)	17,808,406,000원 = 17,808,40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특별회계)		55,422,247	53,560,216	1,862,031
602 예치금		55,422,247	53,560,216	1,862,031
01 일반예치금	55,422,247	55,422,247	53,560,216	1,862,031
○2026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특별회계)	55,422,247,000원 = 55,422,2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일반회계)		90,435	16,160,200	△16,069,765
602 예치금		90,435	16,160,200	△16,069,765
01 일반예치금	90,435	90,435	16,160,200	△16,069,765
○2026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일반회계)	90,435,000원 = 90,435			
지 출 합 계		110,232,844	102,803,661	7,429,183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648,148,276	0	0	0	0	630,562,821	17,585,455	0
2021년도	61,459,456	0	0	0	0	60,812,947	646,509	0
2022년도	108,302,378	0	0	0	0	107,122,659	1,179,719	0
2023년도	69,073,469	0	0	0	0	66,104,259	2,969,210	0
2024년도	17,661,152	0	0	0	0	8,311,530	9,349,622	0
2025년도	2,701,955	0	0	0	0	577,955	2,124,000	0
2026년도	6,161,110	0	0	0	0	3,999,676	2,161,434	0
계	913,507,796	0	0	0	0	877,491,847	36,015,949	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a-b
	계b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602,596,313	0	0	0	0	602,531,762	0	64,551	45,551,963
2021년도	15,061,248	0	0	0	0	15,061,248	0	0	46,398,208
2022년도	33,100,066	0	0	0	0	33,100,066	0	0	75,202,312
2023년도	92,687,079	0	0	0	0	92,687,079	0	0	△ 23,613,610
2024년도	56,456,616	0	0	0	0	56,456,616	0	0	△ 38,795,464
2025년도	26,643,268	0	0	0	0	26,643,268	0	0	△ 23,941,313
2026년도	27,311,756	0	0	0	0	27,311,756	0	0	△ 21,150,646
계	853,856,346	0	0	0	0	853,791,795	0	64,551	59,651,45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104,301,272	108,071,734	86,921,088	△21,150,646	
예치금	소계	100,301,272	104,071,734	73,321,088	△30,750,646	
	농협은행	39,267,472	37,854,215	32,481,451	△5,372,764	
	신한은행	61,033,800	66,217,519	40,839,637	△25,377,882	
예탁금	소계	4,000,000	4,000,000	13,600,000	9,600,000	
	일반회계	4,000,000	4,000,000	10,800,000	6,800,000	
	산업단지특별회계	0	0	2,800,000	2,8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획예산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 (3) 설치년도 : 202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정수입 감소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기금 운용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㉓ + ㉑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100,000	2,500	100,000	△97,500	2,5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㉑+㉒-㉓
2,500	0	0	2,500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원기준 : ○ 각 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지원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별기금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02,500	2,707,490	△2,604,990	합 계	102,500	2,707,490	△2,604,990
전 입 금	0	0	0	비용자성사업비	0	0	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100,000	2,607,490	△2,507,490	예 치 금	2,500	100,000	△97,500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500	100,000	△97,5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전 출 금	100,000	0	100,000
				기 타 지 출	0	2,607,490	△2,607,49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500	100,000	△97,5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500	100,000	△97,500	
216 이자수입	2,500	100,000	△97,5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	100,000	△97,500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500,000원 = 2,5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0	2,607,490	△2,507,490	
710 보전수입등	100,000	2,607,490	△2,507,490	
714 예치금회수	100,000	2,607,490	△2,507,490	
714-01 예치금회수	100,000	2,607,490	△2,507,490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100,000,000원 = 100,000
수 입 합 계	102,500	2,707,490	△2,604,99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기획예산과	102,500	2,707,490	△2,604,990
재정·금융	102,500	2,707,490	△2,604,990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02,500	2,707,490	△2,604,990
내부거래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00,000	2,607,490	△2,507,4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100,000	2,607,490	△2,507,490
702 기금전출금	100,000	2,607,490	△2,507,490
01 기금전출금	100,000	2,607,490	△2,507,490
○일반회계	100,000,000원 = 100,000		
보전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500	100,000	△97,5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치	2,500	100,000	△97,500
602 예치금	2,500	100,000	△97,500
01 일반예치금	2,500	100,000	△97,500
○2026년도 말 시금고	2,500,000원 = 2,500		
지 출 합 계	102,500	2,707,490	△2,604,99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0	0	0	0	0	0	0	0
2021년도	0	0	0	0	0	0	0	0
2022년도	0	0	0	0	0	0	0	0
2023년도	0	0	0	0	0	0	0	0
2024년도	2,607,490	2,607,490	0	0	0	0	0	0
2025년도	100,000	0	0	0	0	0	100,000	0
2026년도	2,500	0	0	0	0	0	2,500	0
계	2,709,990	2,607,490	0	0	0	0	102,500	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0	0	0	0	0	0	0	0	0
2021년도	0	0	0	0	0	0	0	0	0
2022년도	0	0	0	0	0	0	0	0	0
2023년도	0	0	0	0	0	0	0	0	0
2024년도	0	0	0	0	0	0	0	0	2,607,490
2025년도	2,607,490	0	0	0	0	0	0	2,607,490	△2,507,490
2026년도	100,000	0	0	0	0	0	100,000	0	△97,500
계	2,707,490	0	0	0	0	0	100,000	2,607,490	2,50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2,607,490	100,000	2,500	△97,500	
예치금	소계	2,607,490	100,000	2,500	△97,500	
	농협은행	2,607,490	100,000	2,500	△97,500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8. 14.]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89호, 2024. 8.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금총괄관리관”이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예탁 및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4.8.14.>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8.14.>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 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1.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8.14.>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제8조(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 외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2.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도 예탁을 인정한 기금

제9조(이자)

-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회계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8.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8.14.>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기금업무 담당 국장과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4.8.14.>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8.14.>

제13조(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8.14.>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4.8.14.>
 1.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과장
 2.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과장
 4.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제15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8.14.>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8.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통합기금 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제4조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승계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신설한다.

제4조(예수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제4조에 따른 통합 계정에서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⑥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17조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⑦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⑩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4. 29.]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828호, 2021. 4.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및 이자지급 등)

-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자금을 예탁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예탁한 부서의 장은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 상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

-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기간)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상환)

-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제2항에서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 ② 예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 계산 시 1년은 36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담당관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 (3) 설치년도 : 1998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재난 예방활동
 -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㉓ + ㉑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5,796,946	2,332,248	1,953,400	378,848	6,175,794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㉑+㉒-㉓
6,175,794	0	0	6,175,794

- (2) 재원조성 : 법정 적립금(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예치금 이자수입 등
- (3) 지원기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 (4) 지원대상 : 사전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관리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8,129,194	6,003,006	2,126,188	합 계	8,129,194	6,003,006	2,126,188
전 입 금	2,118,948	1,099,453	1,019,495	비용자성사업비	1,653,400	1,353,400	300,000
보 조 금	1,800	1,80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300,000	200,000	100,00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5,796,946	4,717,913	1,079,033	예 치 금	6,175,794	4,449,606	1,726,188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11,500	183,840	27,66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11,500	183,840	27,660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500	183,840	27,660	
216 이자수입	211,500	183,840	27,66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1,500	183,840	27,660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11,500,000원 = 211,500
500 보조금	1,800	1,800	0	
520 시·도비보조금등	1,800	1,800	0	
521 시·도비보조금등	1,800	1,800	0	
521-01 시·도비보조금등	1,800	1,800	0	
				○안전보안관 운영 1,800,000원 = 1,8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15,894	5,817,366	2,098,528	
710 보전수입등	5,796,946	4,717,913	1,079,033	
714 예치금회수	5,796,946	4,717,913	1,079,033	
714-01 예치금회수	5,796,946	4,717,913	1,079,033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5,796,946,000원 = 5,796,946
720 내부거래	2,118,948	1,099,453	1,019,495	
721 전입금	2,118,948	1,099,453	1,019,495	
721-03 기타회계전입금	2,118,948	1,099,453	1,019,495	
				○일반회계 전입금 2,118,948 o 법정 적립금 2,118,948,000원 = 2,118,948
수 입 합 계	8,129,194	6,003,006	2,126,188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재난안전담당관	8,129,194	6,003,006	2,126,188
재난방재·민방위	8,129,194	6,003,006	2,126,188
재난복구	1,953,400	1,553,400	400,000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1,953,400	1,553,400	400,000
사전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1,920,000	1,520,000	400,000
101 인건비	300,000	200,000	100,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	200,000	100,000
○재난 응급복구 작업자 인건비 등	300,000,000원 = 300,000		
201 일반운영비	900,000	700,000	200,000
01 사무관리비	800,000	600,000	200,000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800,000,000원 = 800,000		
02 공공운영비	100,000	100,000	0
○장비 유지관리비(유류비) 등	100,000,000원 = 100,000		
206 재료비	300,000	200,000	100,000
01 재료비	300,000	200,000	100,000
○응급복구관련 재료비(제설용 자재 등)	300,000,000원 = 300,000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0,000	20,000	0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000	20,000	0
○민간인 활동수당 및 동원장비 유류대	20,000,000원 = 20,000		
307 민간이전	50,000	50,000	0
01 의료 및 회복비	50,000	50,000	0
○재난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비	50,000,000원 =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0
01 시설비	200,000	200,000	0
○응급복구 설계비 및 공사비	200,000,000원 = 200,000		
405 자산취득비	150,000	150,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150,000	0
○재난 대응 장비 구입비 등	150,000,000원 = 150,000		
안전보안관 운영	6,000	6,000	0
201 일반운영비	3,000	3,000	0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01 사무관리비		3,000	3,000	3,000	0
○안전보안관 활동 홍보물 구입	3,000,000원 =	3,000			
	[도 900]				
	[시 2,100]				
301 일반보전금			3,000	3,000	0
11 행사실비지원금		1,000	1,000	1,000	0
○안전보안관 회의, 교육 참석자 급량비 등	1,000,000원 =	1,000			
	[도 300]				
	[시 700]				
14 기타보상금		2,000	2,000	2,000	0
○안전보안관 활동수당	2,000,000원 =	2,000			
	[도 600]				
	[시 1,400]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2,100	2,100	0
201 일반운영비			2,100	2,100	0
01 사무관리비		2,100	2,100	2,100	0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2,100,000원 =	2,100			
계약업무 수행			300	300	0
201 일반운영비			300	300	0
01 사무관리비		300	300	300	0
○G2B 이용수수료	300,000원 =	300			
재난대응훈련 지원			25,000	25,000	0
201 일반운영비			15,000	15,000	0
01 사무관리비		5,000	5,000	5,000	0
○훈련물품 구입 및 홍보	5,000,000원 =	5,000			
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	10,000	0
○시설·장비 임차료 등	10,000,000원 =	10,000			
301 일반보전금			10,000	10,000	0
11 행사실비지원금		5,000	5,000	5,000	0
○훈련참가자 급량비 지원	5,000,000원 =	5,000			
14 기타보상금		5,000	5,000	5,000	0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훈련참가비 지원 5,000,000원 = 5,000			
재무활동	6,175,794	4,449,606	1,726,188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6,175,794	4,449,606	1,726,188
재난관리기금 예치금(기금 적립액)	6,175,794	4,449,606	1,726,188
602 예치금	6,175,794	4,449,606	1,726,188
01 일반예치금 1,530,794	1,530,794	122,606	1,408,188
○2026년도 일반예치금 1,530,794,000원 = 1,530,794			
02 의무예치금 4,645,000	4,645,000	4,327,000	318,000
○2026년도 의무예치금 4,645,000,000원 = 4,645,000			
지 출 합 계	8,129,194	6,003,006	2,126,188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27,633,706	20,958,189	3,964,430	0	0	0	2,194,901	516,186
2021년도	1,964,927	1,654,568	214,300	0	0	0	96,059	0
2022년도	1,816,553	1,744,829	6,600	0	0	0	65,124	0
2023년도	2,014,726	1,851,850	36,900	0	0	0	125,976	0
2024년도	2,329,815	2,010,835	3,000	0	0	0	315,980	0
2025년도	2,369,033	2,099,453	85,740	0	0	0	183,840	0
2026년도	2,332,248	2,118,948	1,800	0	0	0	211,500	0
계	40,461,008	32,438,672	4,312,770	0	0	0	3,193,380	516,186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①-②
	계②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27,362,839	24,243,791	0	3,015,784	0	0	0	103,264	270,867
2021년도	1,108,251	921,408	0	167,974	0	0	0	18,869	856,676
2022년도	762,540	666,367	0	79,693	0	0	0	16,480	1,054,013
2023년도	1,659,449	1,566,771	0	91,872	0	0	0	806	355,277
2024년도	3,261,546	3,128,189	0	124,498	0	0	0	8,859	△931,731
2025년도	2,321,610	2,021,280	0	300,000	0	0	0	330	47,423
2026년도	1,953,400	1,653,400	0	300,000	0	0	0	0	378,848
계	38,429,635	34,201,206	0	4,079,821	0	0	0	148,608	2,031,373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4,717,913	5,796,946	6,175,794	378,848	
예치금	소계	4,717,913	5,796,946	6,175,794	378,848	
	신한은행	4,717,913	5,796,946	6,175,794	378,848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4. 15.]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594호, 2021. 4.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춘천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제2조(기금 자원) 춘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개정 2009·5·14, 2011·10·27>
2. 기금운용 수익금<개정 2011·10·27>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9·5·14, 2011·10·27>

제3조(기금 운용·관리)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말함)을 예치·관리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6조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4.15.>

② 삭제

[전부개정 2011·10·27] <2015.6.16.>

제4조 삭제 < 2011·10·27>

제5조 삭제 < 2011·10·27>

제6조(기금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27, 2014.5.1, 2021.4.1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개정 2014.5.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개정 2014.5.1>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춘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09·5·14, 2014.5.1>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개정 2014.5.1>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09·5·14, 개정 2011·10·27, 2014.5.1>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신설 2014.5.1>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신설 2014.5.1>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4.5.1>
9.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신설 2014.5.1>
10.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및 안전시설물 설치<신설 2014.5.1>
11.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14.5.1, 개정 2021.4.15.>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4.15.>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7조(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응자)

- 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2014.5.1, 2021.4.15.>
-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응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응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응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2014.5.1>
- ③ 그 밖에 기금의 응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0·27>

제8조(기금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제9조(회계공무원)

-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1·10·27>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10·27, 2014.5.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1·10·27, 2014.5.1>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신설 2014.5.1, 2015.6.16.>
 4. 분임기금출납원 : 읍·면·동 회계업무 담당<신설 2014.5.1>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 ③ 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장에게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신설 2014.5.1>

제10조(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5·14, 2011·10·27>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5·14>
-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9.10]
-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9·5·14, 2011·10·27>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5·14, 2011·10·27, 2019.9.1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5.1]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5.1]

제11조(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부개정 2011.10.27]

제12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1.10.27>
-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1.10.27>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5.1>

제13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2014.5.1>
-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27>
 - 1. 기금의 조성계획
 - 2. 기금의 사용계획
 - 3. 기금의 운용방법
 -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5.14, 2011.10.27>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5.14, 2011.10.27, 2014.5.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0.27>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춘천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춘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장기예치 기금액은 춘천시의 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춘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④ 생략

부칙 <2006·8·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3조제1항,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1항,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중 “제29조”를 “제34조”로 한다.

②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3조제1항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로 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중 “분임기금운영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4. 15.]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825호, 2021. 4.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7>

제2조(최저적립액) 춘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0·27, 2021.4.15.>

제3조(기금확보 및 적립시기)

-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1·10·27>
-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해야 한다.<개정 2011·10·27>

제4조 삭제< 2011·10·27>

제5조(기금용자)

- ①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1. 상환기일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용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해 춘천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10·27>

제6조(용자금 상환)

- ① 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용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1·10·27>
-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1·10·27>
 2.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용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개정 2011·10·27>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용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용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개정 2011·10·27>

제7조(상환기일 연장)

-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1.10.27>
-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일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1.10.27>

제8조 삭제< 2011.10.27>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 ① 재난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춘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부개정 2011.10.27]

제10조(장부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10.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기금



기획예산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충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 설치목적 :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 (3) 설치년도 : 202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충청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충청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취약지역 자살 및 고독사 예방 지역건강돌봄 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관계 형성 프로그램 사업, 다문화 부모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㉑ + ㉓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1,073,190	652,660	100,000	552,660	1,625,85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 = ㉑ + ㉒ - ㉓
1,625,850	0	0	1,625,850

- (2) 재원조성 :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그 밖에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3) 지원기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합하는 사업
- (4) 지원대상 : 충청시민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275,850	545,183	730,667	합 계	1,275,850	545,183	730,667
전 입 금	0	0	0	비용자성사업비	100,000	0	100,0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1,075,850	0	1,075,850
예 치 금 회 수	623,190	241,662	381,528	예 치 금	100,000	545,183	△445,183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660	3,521	△861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650,000	300,000	350,00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52,660	303,521	349,139	
210 경상적세외수입	2,660	3,521	△861	
216 이자수입	2,660	3,521	△86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660	3,521	△861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660,000원 = 2,660
220 임시적세외수입	650,000	300,000	350,000	
224 기타수입	650,000	300,000	350,000	
224-03 기부금수입	650,000	300,000	350,000	
				○2026년도 기부금 수입 650,000,000원 = 65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3,190	241,662	381,528	
710 보전수입등	623,190	241,662	381,528	
714 예치금회수	623,190	241,662	381,528	
714-01 예치금회수	623,190	241,662	381,528	
				○2025년도말 시금고 예치금 623,190,000원 = 623,190
수 입 합 계	1,275,850	545,183	730,667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기획예산과	1,275,850	545,183	730,667
재정·금융	1,175,850	545,183	630,667
재무활동(기획예산과)	1,175,850	545,183	630,667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	100,000	545,183	△445,183
고향사랑기금 예치	100,000	545,183	△445,183
602 예치금	100,000	545,183	△445,183
01 일반예치금 100,000	100,000	545,183	△445,183
○2026년도 일반예치금 100,000,000원 = 100,000			
내부거래지출(고향사랑기금)	1,075,850	0	1,075,8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1,075,850	0	1,075,850
704 예탁금	1,075,850	0	1,075,850
01 예탁금 1,075,850	1,075,850	0	1,075,8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75,850,000원 = 1,075,850			
취약계층지원	30,000	0	30,000
취약계층 복지지원	30,000	0	30,000
취약계층 돌봄지원(고향사랑기금)	30,000	0	30,000
(지정기부사업)취약지역 자살 및 고독사 예방 지역건강돌봄	30,000	0	30,000
307 민간이전	30,000	0	30,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	30,000	0	30,000
○취약지역 자살 및 고독사 예방 지역건강돌봄 30,000,000원 = 30,000			
가족·여성	20,000	0	20,000
다문화 지원	20,000	0	20,000
다문화가족 지원(고향사랑기금)	20,000	0	20,000
(일반기부사업)다문화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20,000	0	20,000
307 민간이전	20,000	0	20,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	20,000	0	20,000
○다문화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20,000,000원 = 20,000			
청소년	50,000	0	50,00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50,000	0	50,000
청소년 육성(고향사랑기금)	50,000	0	50,000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일반기부사업)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관계형성 프로그램	50,000	0	50,000
	307 민간이전	50,000	0	50,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0	0	50,000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관계형성 프로그램 50,000,000원 =	50,000		
지 출 합 계		1,275,850	545,183	730,667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0	0	0	0	0	0	0	0
2021년도	0	0	0	0	0	0	0	0
2022년도	0	0	0	0	0	0	0	0
2023년도	390,661	0	0	0	0	0	53	390,608
2024년도	487,389	0	0	0	0	0	2,540	484,849
2025년도	405,140	0	0	0	0	0	5,140	400,000
2026년도	652,660	0	0	0	0	0	2,660	650,000
계	1,935,850	0	0	0	0	0	10,393	1,925,457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①-②
	계②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0	0	0	0	0	0	0	0	0
2021년도	0	0	0	0	0	0	0	0	0
2022년도	0	0	0	0	0	0	0	0	0
2023년도	0	0	0	0	0	0	0	0	390,661
2024년도	0	0	0	0	0	0	0	0	487,389
2025년도	180,000	180,000	0	0	0	0	0	0	225,140
2026년도	100,000	100,000	0	0	0	0	0	0	552,660
계	280,000	280,000	0	0	0	0	0	0	1,655,85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고향사랑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878,050	1,523,190	1,625,850	102,660	
예치금	소계	428,050	1,073,190	100,000	△973,190	
	농협은행	428,050	1,073,190	100,000	△973,190	정기예금
예탁금	소계	450,000	450,000	1,525,850	1,075,850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450,000	450,000	1,525,850	1,075,850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8. 14.]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90호, 2024. 8.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춘천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의 특산물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춘천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춘천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6.>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물 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답례품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① 시장은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8.14.>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심있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8.14.>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팀장이 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기금의 결산)

-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기부 활성화 시행)

-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활성화 관련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3.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또는 행사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4.]

제23조(기부자 예우)

-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의 발송
 2.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

[본조신설 2024.8.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춘천시 답례품선정위원회 또는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답례품선정위원회 또는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춘천시 답례품선정위원회 또는 춘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5.16.>

이 조례는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설치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숙소 제공, 관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출자금 지급
- (3) 설치년도 : 2002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및 시설 확보를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인력 유인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숙소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 펀드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㉓ + ㉑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3,587,979	1,400,300	2,486,550	△1,086,250	2,501,72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㉑+㉒-㉓
2,501,729	0	0	2,501,729

- (2) 재원조성 : 임대료 수입, 기타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펀드 투자금 회수 등
- (3) 지원기준 : 임대숙소 확보를 위한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중개보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
- (4) 지원대상 : 춘천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788,279	4,926,115	△1,137,836	합 계	3,788,279	4,926,115	△1,137,836
전 입 금	0	0	0	비용자성사업비	2,286,550	1,026,550	1,260,0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200,000	200,00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800,000	△800,000	예 탁 금	1,200,000	0	1,200,000
예 치 금 회 수	2,387,979	2,452,715	△64,736	예 치 금	101,729	3,699,565	△3,597,836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72,000	36,000	36,0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1,328,300	1,637,400	△309,10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400,300	1,653,400	△253,100	
210 경상적세외수입	1,120,300	938,400	181,900	
211 재산임대수입	48,300	82,400	△34,1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8,300	82,400	△34,100	
				○임대숙소 임대료 수입 48,300,000원 = 48,300
214 사업수입	1,000,000	840,000	160,000	
214-04 배당금수입	1,000,000	840,000	160,000	
				○펀드 투자금 회수 1,000,000,000원 = 1,000,000
216 이자수입	72,000	16,000	56,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2,000	16,000	56,000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72,000,000원 = 72,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80,000	715,000	△435,000	
224 기타수입	280,000	715,000	△435,000	
224-07 그외수입	280,000	715,000	△435,000	
				○전세보증금 반환금 280,000,000원 = 28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87,979	3,272,715	△884,736	
710 보전수입등	2,387,979	2,452,715	△64,736	
714 예치금회수	2,387,979	2,452,715	△64,736	
714-01 예치금회수	2,387,979	2,452,715	△64,736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2,387,979,000원 = 2,387,979
수 입 합 계	3,788,279	4,926,115	△1,137,836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기업지원과	3,788,279	4,926,115	△1,137,836
산업진흥·고도화	3,788,279	4,926,115	△1,137,836
중소기업 육성	2,486,550	1,226,550	1,260,000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숙소 운영(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420,550	426,550	△6,000
중소기업 임대숙소 지원 및 관리	217,750	223,750	△6,000
201 일반운영비	7,750	8,750	△1,000
01 사무관리비	2,750	3,750	△1,000
○각종 수수료	2,750		
o 공인중개보수료	350,000원*5건 = 1,750		
o 법무사 수수료	200,000원*5건 = 1,000		
02 공공운영비	5,000	5,000	0
○숙소관리 및 유지보수	5,000,000원 = 5,000		
406 기타자본이전	210,000	215,000	△5,000
01 기타자본이전	210,000	215,000	△5,000
○전세 보증금	210,000		
o 변경	100,000,000원*2개소 = 200,000		
o 갱신	5,000,000원*2개소 = 10,000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보증금 지원	200,000	200,000	0
501 융자금	200,000	200,000	0
01 민간융자금	200,000	200,000	0
○임대보증금	20,000,000원*10건 = 2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2,800	2,800	0
201 일반운영비	2,800	2,800	0
01 사무관리비	2,800	2,800	0
○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	70,000원*8명*5회 = 2,800		
중소기업 자금 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2,066,000	800,000	1,266,000
지역혁신 펀드 조성	400,000	800,000	△400,000
502 출자금	400,000	800,000	△400,000
01 출자금	400,000	800,000	△400,000
○지역혁신 펀드 출자(4차)	400,000,000원 = 400,000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	1,666,000	0	1,666,000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502 출자금		1,666,000	0	1,666,000
01 출자금	1,666,000	1,666,000	0	1,666,000
○강원 전략산업 투자펀드 출자(3차) 1,666,000,000원 = 1,666,000				
재무활동(기업지원과)		1,301,729	3,699,565	△2,397,836
내부거래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1,200,000	0	1,2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1,200,000	0	1,200,000
704 예탁금		1,200,000	0	1,200,000
01 예탁금	1,200,000	1,200,000	0	1,2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200,000,000원 = 1,200,000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101,729	3,699,565	△3,597,836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1,729	3,699,565	△3,597,836
602 예치금		101,729	3,699,565	△3,597,836
01 일반예치금	101,729	101,729	3,699,565	△3,597,836
○2026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101,729,000원 = 101,729				
지 출 합 계		3,788,279	4,926,115	△1,137,836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13,534,695	4,900,000	0	0	0	0	294,196	8,340,499
2021년도	1,291,102	0	0	0	0	0	19,556	1,271,546
2022년도	1,117,985	0	0	0	0	0	23,481	1,094,504
2023년도	4,767,627	4,000,000	0	0	0	0	19,397	748,230
2024년도	1,543,876	0	0	0	0	0	117,133	1,426,743
2025년도	3,207,400	1,534,000	0	0	0	0	36,000	1,637,400
2026년도	1,400,300	0	0	0	0	0	72,000	1,328,300
계	26,862,985	10,434,000	0	0	0	0	581,763	15,847,222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11,733,042	9,518,784	0	2,214,258	0	0	0	0	1,801,653
2021년도	1,925,499	1,925,499	0	0	0	0	0	0	△634,397
2022년도	1,902,368	1,902,368	0	0	0	0	0	0	△784,383
2023년도	2,341,104	2,341,104	0	0	0	0	0	0	2,426,523
2024년도	1,769,422	1,769,422	0	0	0	0	0	0	△225,546
2025년도	2,760,550	2,560,550	200,000	0	0	0	0	0	446,850
2026년도	2,486,550	2,286,550	200,000	0	0	0	0	0	△1,086,250
계	24,918,535	22,304,277	400,000	2,214,258	0	0	0	0	1,944,45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3,652,715	3,587,979	2,501,729	△1,086,250	
예치금	소계	2,452,715	2,387,979	101,729	△2,286,250	
	신한은행	2,452,715	2,387,979	101,729	△2,286,250	
예탁금	소계	1,200,000	1,200,000	2,400,000	1,200,000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1,200,000	1,200,000	2,400,000	1,200,000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0. 2.]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901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2.>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임대숙소”란 시에 위치하는 주거 용도의 주택으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를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4. 삭제<2023.9.27.>
5.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농식품투자조합”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8.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관리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9.27.>

제4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4.10.2.>
 1. 임대숙소 지원
 2. 임대보증금 지원
 3.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
- 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0.2.>

제5조(구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9.27.,2024.10.2.>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임대숙소 임대료
3. 임대숙소 전세보증금 반환
4. 임대보증금의 반환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기금 출자 회수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20.11.5.,>

2023.9.27.>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3.9.27.>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제3장 임대숙소 및 임대보증금 지원 관리

제7조(임대숙소 지원)

- ①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다.<개정 2024.10.2.>
- ②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0.2.>
- ③ 임대숙소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개정 2024.10.2.>

제7조의2(임대보증금 지원)

- ① 지원대상은 제7조제1항을 따르며, 제7조제3항에 따른 규모의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 ③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

제7조의3(관리 및 채권확보)

-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은 지원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

제7조의4(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임대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0.2.]

제8조(임대숙소 채권확보) 시장은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부과 등)

- ① 임대숙소의 임대료는 연간 전세보증금의 100분의 3으로 분기별로 부과하고,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미납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③ 임대보증금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천재지변·재해·업체부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임대료,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00분의 8로 한다.

제10조(임대계약 등)

- ① 임대신청은 중소기업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총 임대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6년을 초과하여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에 한하여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③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계속하여 임대숙소를 점유할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임대숙소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숙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전대하거나 입주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한 경우
2. 임대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임대계약 목적에 위배될 경우
3. 임대숙소의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임대숙소의 분기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기업이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출자금

제12조(출자금)

- ① 삭제<2024.10.2.>
- ② 삭제<2024.10.2.>
-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한 자금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한다.<개정 2023.9.27.,2024.10.2.>
- ④ 시장은 기금을 출자받은 투자조합의 자금운용 실태, 투자기업 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지정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투자조합은 결산보고 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5장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임대숙소 지원 대상 및 순위 결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9.27.>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삭제<2024.10.2.>

부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된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임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계약기간의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총 임대계약 기간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총 임대계약 기간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 계약 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1.]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919호, 2024. 12. 31.,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기업지원과), 033-250-3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부의 관리) ①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 숙소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2. 채권관리부: 별지 제2호서식

② 기금관리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관리할 수 있다.

제3조(임대료 등 납부고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임대숙소의 임대료·체납액 및 변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제4조(시설의 임대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임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임대시설의 배정)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임대숙소 신청서를 접수받아 임대숙소의 규모와 입주인원, 현 거주상태, 신청업체의 공유재산 임대료·관리비 납부상태 등을 고려하여 확보·보유한 시설을 배정한다.

② 임대숙소는 시설배정 통보 후 계약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후 계약 체결한다.

제6조(기금 출자)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①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 대표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8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 ①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중소기업에 조례 제7조의3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9조(지원대상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원대상을 관리하며,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0조(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예고)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및 그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에 만료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1조(협약 체결)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중소기업과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2조(운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부칙 <2019.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고령사회정책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설치목적 :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 (3) 설치년도 : 2014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원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마을발전사업, 장학사업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㉓ + ㉑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327,593	163,800	189,600	△25,800	301,793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㉑+㉒-㉓
301,793	0	0	301,793

-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4), 예치금 이자수입 등
- (3) 지원기준 : 주민복지 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 (4) 지원대상 :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491,393	479,399	11,994	합 계	491,393	479,399	11,994
전 입 금	150,000	150,000	0	비용자성사업비	189,600	212,180	△22,58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280,000	0	280,000
예 치 금 회 수	327,593	327,193	400	예 치 금	21,793	267,219	△245,426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13,800	2,206	11,594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3,800	2,206	11,594	
210 경상적세외수입	13,800	2,206	11,594	
216 이자수입	13,800	2,206	11,59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3,800	2,206	11,594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3,800,000원 = 13,8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7,593	477,193	400	
710 보전수입등	327,593	327,193	400	
714 예치금회수	327,593	327,193	400	
714-01 예치금회수	327,593	327,193	400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327,593,000원 = 327,593
720 내부거래	150,000	150,000	0	
721 전입금	150,000	15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50,000	150,000	0	
				○일반회계 전입금 150,000,000원 = 150,000
수 입 합 계	491,393	479,399	11,994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915,714	838,757	0	0	0	0	23,902	53,055
2021년도	147,131	144,586	0	0	0	0	2,545	0
2022년도	188,615	156,454	0	0	0	0	2,161	30,000
2023년도	256,810	245,197	0	0	0	0	746	10,867
2024년도	255,460	228,251	0	0	0	0	2,206	25,003
2025년도	185,542	167,807	0	0	0	0	2,436	15,299
2026년도	163,800	150,000	0	0	0	0	13,800	0
계	2,113,072	1,931,052	0	0	0	0	47,796	134,224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491,131	491,131	0	0	0	0	0	0	424,583
2021년도	375,960	375,960	0	0	0	0	0	0	△228,829
2022년도	111,470	111,470	0	0	0	0	0	0	77,145
2023년도	232,540	232,540	0	0	0	0	0	0	24,270
2024년도	198,400	198,400	0	0	0	0	0	0	57,060
2025년도	212,180	212,180	0	0	0	0	0	0	△26,638
2026년도	189,600	189,600	0	0	0	0	0	0	△25,800
계	1,811,281	1,811,281	0	0	0	0	0	0	301,791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안식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327,193	327,593	301,793	△25,800	
예치금	소계	327,193	327,593	21,793	△305,800	
	신한은행	327,193	327,593	21,793	△305,800	
예탁금	소계	0	0	280,000	280,000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0	0	280,000	280,000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1. 16.]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27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식원”이란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일원에 조성한 화장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안식원이 있는 동산면 지역을 말한다.
3. “사업지역”이란 안식원이 있는 동산면 군자3리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을 제외한 동산면 지역을 말한다.
5. “주변지역 주민”이란 춘천시 동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식원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지역 주민지원사업
2.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식원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4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11.9., 2023.11.16.>

제6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인근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
 4.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만, 해당 연도 사업비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5.6.16., 2020.11.5.>
-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11.16.>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 ③ <삭제 2018.11.9>

제8조 <삭제 2018.11.9>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기금 담당국장, 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18.11.9>
 2.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4명
 3.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명 이내
- ③ <삭제 2018.11.9>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6.>

제11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 ② <삭제 2018.11.9>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8.11.9>
-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18.11.9>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11.9>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 ① 시장은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관을 두어야 하며,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기금정산)

-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 ② 주민지원사업계획서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이 제6조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8.11.9>

제18조 <삭제 2018.11.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①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2) 설치목적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과 권리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3)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양성평등 촉진 정책 및 사업을 통하여 양성간의 격차 해소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추진 체계 내실화 및 시책 강화 사업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사업 지원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㉓ + ㉑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1,038,931	25,250	54,000	△28,750	1,010,18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㉑+㉒-㉓
1,010,181	0	0	1,010,181

- (2)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 (3) 지원기준 :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 주류화 실현 사업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4) 지원대상 :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7,180	64,175	△6,995	합 계	57,180	64,175	△6,995
전 입 금	0	0	0	비용자성사업비	54,000	34,000	20,0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31,930	45,332	△13,402	예 치 금	3,180	30,175	△26,995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5,250	18,843	6,407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50	518	△268	
210 경상적세외수입	250	518	△268	
216 이자수입	250	518	△26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50	518	△268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50,000원 = 25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930	63,657	△6,727	
710 보전수입등	31,930	45,332	△13,402	
714 예치금회수	31,930	45,332	△13,402	
714-01 예치금회수	31,930	45,332	△13,402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31,930,000원 = 31,930
720 내부거래	25,000	18,325	6,675	
722 예탁금및예수금	25,000	18,325	6,675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5,000	18,325	6,6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 정 예탁금 이자 25,000,000원 = 25,000
수 입 합 계	57,180	64,175	△6,995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여성가족과	57,180	64,175	△6,995
가족·여성	57,180	64,175	△6,995
여성 및 가족정책	54,000	34,000	20,000
여성의 권익증진(양성평등기금)	54,000	34,000	20,000
양성평등기금 운용	54,000	34,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4,000	4,000	0
01 사무관리비	4,000	4,000	0
○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	4,000,000원 = 4,000		
307 민간이전	50,000	30,000	20,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30,000	20,000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50,000,000원 = 50,000		
재무활동(여성가족과)	3,180	30,175	△26,995
보전지출(양성평등기금)(양성평등기금)	3,180	30,175	△26,995
양성평등기금 예치금(기금 적립액)	3,180	30,175	△26,995
602 예치금	3,180	30,175	△26,995
01 일반예치금	3,180	30,175	△26,995
○2026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3,180,000원 = 3,180		
지출합계	57,180	64,175	△6,995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1,669,253	1,000,000	0	0	0	0	667,690	1,563
2021년도	16,044	0	0	0	0	0	15,597	447
2022년도	14,726	0	0	0	0	0	14,719	7
2023년도	12,924	0	0	0	0	0	12,344	580
2024년도	26,449	0	0	0	0	0	25,466	983
2025년도	18,843	0	0	0	0	0	18,843	0
2026년도	25,250	0	0	0	0	0	25,250	0
계	1,783,489	1,000,000	0	0	0	0	779,909	3,58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594,176	593,616	0	560	0	0	0	0	1,075,077
2021년도	21,024	21,024	0	0	0	0	0	0	△4,980
2022년도	22,986	22,986	0	0	0	0	0	0	△8,260
2023년도	21,249	21,249	0	0	0	0	0	0	△8,325
2024년도	25,875	25,875	0	0	0	0	0	0	574
2025년도	34,000	34,000	0	0	0	0	0	0	△15,157
2026년도	54,000	54,000	0	0	0	0	0	0	△28,750
계	773,310	772,750	0	560	0	0	0	0	1,010,179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1,054,576	1,038,931	1,010,181	△28,750	
예치금	소계	47,575	31,930	3,180	△28,750	
	신한은행	47,575	31,930	3,180	△28,750	
예탁금	소계	1,007,001	1,007,001	1,007,001	0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1,007,001	1,007,001	1,007,001	0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6. 1. 1.]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981호, 2025. 8. 14.,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여성가족과), 033-250-31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금지를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고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서비스
2. 방과 후 아동 돌봄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가족친화제도의 확산
4. 그 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

② 시장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가사·양육·가족행사 등에서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성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기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주간)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홍보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한 행사

제16조(양성평등 기관 및 단체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인권보호, 취약계층 및 여성의 복지증진 등 활동을 하는 시에 소재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비영리법인·단체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와 여성의 국제적 연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1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과 춘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춘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2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9.7., 2025.8.14.>

제2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춘천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0.9.7.>

1. 양성평등 촉진 사업
2.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9조(기금의 관리·운동)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이자 범위에서 운용하며 집행 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제30조(준용) 기금 집행·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5.8.14.>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자원순환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 설치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 (3) 설치년도 : 201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무료급식, 주민쉼터공간 조성, 선진지견학 등)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㉑ + ㉓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299,863	127,618	152,700	△25,082	274,78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 = ㉑ + ㉒ - ㉓
274,781	0	0	274,781

-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 예탁금 이자수입 등
- (3) 지원기준 :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등
- (4) 지원대상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근화동 3,4,5동)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427,481	438,844	△11,363	합 계	427,481	438,844	△11,363
전 입 금	60,000	60,000	0	비용자성사업비	152,700	149,400	3,3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299,863	325,824	△25,961	예 치 금	274,781	289,444	△14,663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9,838	3,520	6,318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57,780	49,500	8,28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7,618	53,020	14,598	
210 경상적세외수입	9,838	3,520	6,318	
216 이자수입	9,838	3,520	6,31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838	3,020	6,818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9,838,000원 = 9,838
220 임시적세외수입	57,780	49,500	8,280	
223 보조금반환수입	57,780	49,500	8,280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 수입	57,780	49,500	8,280	
				○2025년 사업비 잔액 반납분 57,780,000원 = 57,78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9,863	385,824	△25,961	
710 보전수입등	299,863	325,824	△25,961	
714 예치금회수	299,863	325,824	△25,961	
714-01 예치금회수	299,863	325,824	△25,961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299,863,000원 = 299,863
720 내부거래	60,000	60,000	0	
721 전입금	60,000	6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60,000	60,000	0	
				○일반회계 전입금(음식물류폐 기물 처리 수수료의 10%) 60,000,000원 = 60,000
수 입 합 계	427,481	438,844	△11,363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자원순환과	427,481	438,844	△11,363
폐기물	427,481	438,844	△11,363
깨끗한 도시 조성	152,700	149,400	3,30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52,700	149,400	3,300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1,400	1,400	0
201 일반운영비	1,400	1,400	0
01 사무관리비	1,400	1,400	0
○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70,000원*5명*4회 =	1,400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151,300	148,000	3,300
307 민간이전	151,300	148,000	3,3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8,000	124,000	△16,000
○방역사업 지원 20,000,000원 =	20,000		
○주민 선진지 견학 20,000,000원 =	20,000		
○주변영향지역 시설보수 및 정비 24,000,000원 =	24,000		
○운영시설 지원 25,000,000원 =	25,000		
○사회복지시설 지원 9,000,000원 =	9,000		
○목공반 운영 지원 10,000,000원 =	10,000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3,300	24,000	19,300
○인건비	25,800		
o 기본급	23,400,000원 =	23,400	
o 4대보험	2,400,000원 =	2,400	
○사무관리비	8,500		
o 일반수용비	3,000,000원 =	3,000	
o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00,000원 =	2,100	
o 급량비	1,600,000원 =	1,600	
o 물품 구입 및 수선	1,800,000원 =	1,800	
○업무추진비	3,000,000원 =	3,000	
○직무수행경비	6,000,000원 =	6,000	
재무활동(자원순환과)	274,781	289,444	△14,663
보전지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74,781	289,444	△14,663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274,781	289,444	△14,663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602 예치금		274,781	289,444	△14,663
		01 일반예치금	274,781	274,781	289,444	△14,663
		○2026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274,781,000원 =	274,781		
지 출 합 계				427,481	438,844	△11,363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841,023	756,285	0	0	0	0	43,110	41,628
2021년도	81,465	55,650	0	0	0	0	5,151	20,664
2022년도	56,334	5,878	0	0	0	0	5,074	45,382
2023년도	141,990	57,033	0	0	0	0	1,718	83,239
2024년도	154,811	55,258	0	0	0	0	3,787	95,766
2025년도	113,020	60,000	0	0	0	0	3,520	49,500
2026년도	127,618	60,000	0	0	0	0	9,838	57,780
계	1,516,261	1,050,104	0	0	0	0	72,198	393,959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332,910	332,910	0	0	0	0	0	0	508,113
2021년도	121,050	121,050	0	0	0	0	0	0	△39,585
2022년도	136,400	136,400	0	0	0	0	0	0	△80,066
2023년도	178,840	178,840	0	0	0	0	0	0	△36,850
2024년도	170,180	170,180	0	0	0	0	0	0	△15,369
2025년도	149,400	149,400	0	0	0	0	0	0	△36,380
2026년도	152,700	152,700	0	0	0	0	0	0	△25,082
계	1,241,480	1,241,480	0	0	0	0	0	0	274,781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음식물유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325,824	299,863	274,781	△25,082	
예치금	소계	325,824	299,863	274,781	△25,082	
	신한은행	325,824	299,863	274,781	△25,082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18.]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994호, 2025. 9. 18.,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자원순환과), 033-250-3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1. “자원화시설”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2.31.>
2. “주민지원협의체”란 제1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자원화시설 주변에 제3조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12.31.>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시장은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시민, 수집운반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
- ② 기금은 자원화시설 운영기간 동안 조성하도록 하고, 시설폐쇄 확정 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정된 공동사업비 외의 기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춘천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공동사업<개정 2014.12.31., 2016.12.30.>
 2.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만, 해당 연도 사업비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 ③ 지원협의체는 제1항제1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 ④ 삭제<2014.12.31.>

제7조 삭제<2016.12.30.>

제8조(기금의 관리·운동)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동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동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개정 2025.9.18.>

[전문개정 2016.12.30.]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동·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개정 2014.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31., 2016.12.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2019.9.10>

④ 당연직 위원은 자원화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자원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31., 2016.12.30.>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금운동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동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동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동·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4.12.31., 2016.12.30., 2025.9.18.>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6.12.30.>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12조 삭제<2016.12.30.>

제13조(공동사업 추진 특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이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설계, 사업자 선정, 시공관리, 사업비 집행 등 모든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추천사가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4조 삭제<2016.12.30.>

제15조 삭제<2016.12.30.>

제16조 삭제<2016.12.30.>

제17조 삭제<2016.12.30.>

제18조 삭제<2016.12.30.>

제19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해당 연도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에서는 해당 월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다음달 7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수당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근무일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20조 삭제<2016.12.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자원화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여 최초 조성되는 기금에 포함 조성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자원화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여 최초 조성되는 기금에 포함 조성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기금

자원순환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 (3) 설치년도 : 2001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난방비 지원, 선진지견학 등)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㉑ + ㉓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834,516	310,731	517,250	△206,519	627,997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 = ㉑ + ㉒ - ㉓
627,997	0	0	627,997

-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 예탁금 이자수입 등
- (3) 지원기준 :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기타 운영사업 등
- (4) 지원대상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145,247	1,221,375	△76,128	합 계	1,145,247	1,221,375	△76,128
전 입 금	260,000	260,000	0	비용자성사업비	517,250	527,380	△10,13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834,516	895,662	△61,146	예 치 금	627,997	693,995	△65,998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1,175	5,713	15,462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29,556	60,000	△30,444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50,731	65,713	△14,982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75	5,713	15,462	
216 이자수입	21,175	5,713	15,46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175	5,713	15,462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1,175,000원 = 21,175
220 임시적세외수입	29,556	60,000	△30,444	
223 보조금반환수입	29,556	60,000	△30,444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 수입	29,556	60,000	△30,444	
				○2025년 사업비 잔액 반납분 29,556,000원 = 29,55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94,516	1,155,662	△61,146	
710 보전수입등	834,516	895,662	△61,146	
714 예치금회수	834,516	895,662	△61,146	
714-01 예치금회수	834,516	895,662	△61,146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834,516,000원 = 834,516
720 내부거래	260,000	260,000	0	
721 전입금	260,000	26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260,000	260,000	0	
				○일반회계 출연금(폐기물 반 입 수수료 10%) 260,000,000원 = 260,000
수 입 합 계	1,145,247	1,221,375	△76,128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자원순환과	1,145,247	1,221,375	△76,128
폐기물	1,145,247	1,221,375	△76,128
깨끗한 도시 조성	517,250	527,380	△10,130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지원(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517,250	527,380	△10,1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1,750	1,750	0
201 일반운영비	1,750	1,750	0
01 사무관리비	1,750	1,750	0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70,000원*5명*5회 =	1,75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515,500	525,630	△10,130
307 민간이전	515,500	525,630	△10,13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435,000	425,000	10,000
○소각장 주민 선진지 견학(250명) 30,000,000원 =	30,000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 5,000,000원 =	5,000		
○난방비 지원(104가구) 400,000,000원 =	400,000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80,500	100,630	△20,130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24,500		
○상근직원 급여 2,000,000원*1년 =	2,000		
○사무관리비 10,500,000원 =	10,500		
○업무추진비(위원장, 부위원장) 400,000원*12월 =	4,800		
○직책업무수행경비	7,200		
-위원장 400,000원*12월 =	4,800		
-부위원장 200,000원*12월 =	2,400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56,000		
○상근직원 급여 26,000,000원*1년 =	26,000		
○4대보험 480,000원*12월 =	5,760		
○사무관리비 10,560,000원 =	10,560		
○공공운영비 1,680,000원 =	1,680		
○국내여비(협의체위원)	0		
○업무추진비(위원장1, 부위원장2) 300,000원*12월 =	3,600		
○직책업무수행경비	8,400		
-위원장 300,000원*1명*12월 =	3,60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10,335,872	8,101,965	0	0	0	0	1,697,598	536,309
2021년도	416,448	248,672	0	0	0	0	54,212	113,564
2022년도	421,086	253,182	0	0	0	0	58,745	109,159
2023년도	344,167	251,131	0	0	0	0	39,517	53,519
2024년도	396,106	260,000	0	0	0	0	13,888	122,218
2025년도	325,713	260,000	0	0	0	0	5,713	60,000
2026년도	310,731	260,000	0	0	0	0	21,175	29,556
계	12,550,123	9,634,950	0	0	0	0	1,890,848	1,024,325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5,949,213	5,947,253	0	1,960	0	0	0	0	4,386,659
2021년도	1,229,800	1,229,800	0	0	0	0	0	0	△813,352
2022년도	1,453,150	1,453,150	0	0	0	0	0	0	△1,032,064
2023년도	642,430	642,430	0	0	0	0	0	0	△298,263
2024년도	2,819,279	2,819,279	0	0	0	0	0	0	△2,423,173
2025년도	537,380	537,380	0	0	0	0	0	0	△211,667
2026년도	517,250	517,250	0	0	0	0	0	0	△206,519
계	13,148,502	13,146,542	0	1,960	0	0	0	0	△598,379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895,662	834,516	627,997	△206,519	
예치금	소계	895,662	834,516	627,997	△206,519	
	신한은행	895,662	834,516	627,997	△206,519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18.]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994호, 2025. 9. 18.,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자원순환과), 033-250-3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3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2.30.>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2013.10.31>

제4조 삭제<2013.10.31>

제5조 삭제<2016.12.30.>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규모를 말한다.<개정 2013.10.31>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규모를 말한다.<개정 2013.10.31, 2016.12.30.>

제8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해당 연도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2016.12.30.>

제9조(기금의 설치)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31>

1. 춘천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3. 법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5.6.26.>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1., 2025.6.26.>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선진지 견학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구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 사업
나.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4.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삭제<2016.12.30.>

-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13.10.31, 2015.6.16., 2016.12.30., 2020.11.5.>
- ③ 삭제<2013.10.31>
-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신설 2016.12.30.>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개정 2025.9.18.>

제13조 삭제<2016.12.30.>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0.31>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31>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0.31, 2019.9.10.>
-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4.27, 2002.12.9, 2006.6.30, 2007.1.31, 2008.10.30, 2013.10.31, 2016.12.30.>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1.9.15, 2013.10.31, 2016.12.30.>
 2.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개정 2013.10.31, 2016.12.30.>
-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3.10.31, 2016.12.30.>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서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0.31>
- ② 삭제<2016.12.3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0.3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0.31>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0.31, 2016.12.30.>
- ③ 삭제<2016.12.30.>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12.31.]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9.15, 2013.10.31, 2016.12.30., 2025.9.18.>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6.12.30.>

제20조 삭제<2016.12.30.>

제21조 삭제<2016.12.30.>

제22조(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 등) ① 삭제<2016.12.30.>

② 삭제<2016.12.30.>

③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범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6.12.30., 2025.6.26.>

제23조 삭제<2016.12.30.>

제24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이 제11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2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 제24조 조문이동 2025.6.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기금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주변마을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생략

②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을“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⑭ 생략

부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중 “경제환경국장, 청소과장”을 “환경자원국장,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0조 제1항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자원국장”으로 한다.

⑭~20 생략

부칙 <2008·10·3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환경자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환경자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⑩ 생략.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8조 “청소행정담당”을 “청소행정 업무담당”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청소행정담당”을 “청소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 29 생략

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③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순환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징수와 관리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3) 설치년도 : 201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대보수 등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에 따른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㉑ + ㉓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8,737,883	222,377	2,521,050	△2,298,673	6,439,21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 = ㉑ + ㉒ - ㉓
6,439,210	0	0	6,439,210

- (2) 재원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액, 예탁금 이자수입 등
- (3) 지원기준 :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 (4) 지원대상 : 폐기물처리시설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960,260	5,040,768	△1,080,508	합 계	3,960,260	5,040,768	△1,080,508
전 입 금	0	0	0	비용자성사업비	1,050	3,147,970	△3,146,920
보 조 금	0	2,298,400	△2,298,40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3,737,883	2,590,565	1,147,318	예 치 금	1,439,210	1,892,798	△453,588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22,377	151,803	70,574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전 출 금	2,520,000	0	2,520,00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97,377	26,803	70,574	
210 경상적세외수입	97,377	26,803	70,574	
216 이자수입	97,377	26,803	70,57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7,377	26,803	70,574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97,377,000원 = 97,377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62,883	2,715,565	1,147,318	
710 보전수입등	3,737,883	2,590,565	1,147,318	
714 예치금회수	3,737,883	2,590,565	1,147,318	
714-01 예치금회수	3,737,883	2,590,565	1,147,318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3,737,883,000원 = 3,737,883
720 내부거래	125,000	125,000	0	
722 예탁금및예수금	125,000	125,000	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125,000	125,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 정 예탁금 이자 125,000,000원 = 125,000
수 입 합 계	3,960,260	5,040,768	△1,080,508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6,602,258	0	0	0	0	0	320,558	6,281,700
2021년도	1,926,047	0	0	0	0	0	93,034	1,833,013
2022년도	102,967	0	0	0	0	0	102,967	0
2023년도	1,029,972	644,700	306,000	0	0	0	79,272	0
2024년도	1,564,627	439,800	457,200	0	0	0	146,890	520,737
2025년도	2,970,940	0	2,298,400	0	0	0	151,803	520,737
2026년도	222,377	0	0	0	0	0	222,377	0
계	14,419,188	1,084,500	3,061,600	0	0	0	1,116,901	9,156,187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3,080	3,080	0	0	0	0	0	0	6,599,178
2021년도	1,039,847	1,039,847	0	0	0	0	0	0	886,200
2022년도	1,050	1,050	0	0	0	0	0	0	101,917
2023년도	1,000,560	1,000,560	0	0	0	0	0	0	29,412
2024년도	501,820	501,820	0	0	0	0	0	0	1,062,807
2025년도	3,191,870	3,191,870	0	0	0	0	0	0	△220,930
2026년도	2,521,050	1,050	0	0	0	0	2,520,000	0	△2,298,673
계	8,259,277	5,739,277	0	0	0	0	2,520,000	0	6,159,911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7,590,565	8,737,883	6,439,210	△2,298,673	
예치금	소계	2,590,565	3,737,883	1,439,210	△2,298,673	
	신한은행	2,590,565	3,737,883	1,439,210	△2,298,673	
예탁금	소계	5,000,000	5,000,000	5,000,000	0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5,000,000	5,000,000	5,000,000	0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18.]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994호, 2025. 9. 18.,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자원순환과), 033-250-3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30.>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2021.9.30.>

제4조 삭제<2021.9.30.>

제5조 삭제<2021.9.30.>

제6조 삭제<2021.9.30.>

제7조(납부계획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폐기물 발생예정량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8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21.9.30.>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4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삭제<2016.12.30.>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30.,2021.9.30.>

제1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9.30.>

1. 제8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30.>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비용
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②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30.>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16.12.3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6.12.30.>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2.30., 2025.9.18.>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 ② 제척은 제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4.12.31.]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12.31.]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20조 삭제<2016.12.30.>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개정 2025.9.18.>

[전문개정 2014.12.31.]

제22조 삭제<2016.12.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의 개발 사업을 착공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축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설치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3) 설치년도 : 201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 향상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기금사업에 편입 지출
 -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 공공계시대 등 옥외광고물 정비 및 시설물 설치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㉑ + ㉓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495,993	10,000	504,240	△494,240	1,753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 = ㉑ + ㉒ - ㉓
1,753	0	0	1,753

-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 광고물 허가 수수료, 과태료 등
- (3) 지원기준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 월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 (4)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불법유동광고물 정비)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05,993	766,228	△260,235	합 계	505,993	766,228	△260,235
전 입 금	0	314,000	△314,000	비용자성사업비	504,240	502,240	2,0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495,993	445,268	50,725	예 치 금	1,753	263,988	△262,235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10,000	6,960	3,04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0,000	6,960	3,040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0	6,960	3,040	
216 이자수입	10,000	6,960	3,04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	6,960	3,040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0,000,000원 = 1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5,993	759,268	△263,275	
710 보전수입등	495,993	445,268	50,725	
714 예치금회수	495,993	445,268	50,725	
714-01 예치금회수	495,993	445,268	50,725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495,993,000원 = 495,993
수 입 합 계	505,993	766,228	△260,235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2,215,358	2,006,750	47,800	0	0	0	147,718	13,090
2021년도	685,561	551,750	129,000	0	0	0	4,811	0
2022년도	674,939	644,000	24,682	0	0	0	6,257	0
2023년도	316,634	314,000	0	0	0	0	2,634	0
2024년도	320,861	314,000	0	0	0	0	6,861	0
2025년도	320,960	314,000	0	0	0	0	6,960	0
2026년도	10,000	0	0	0	0	0	10,000	0
계	4,544,313	4,144,500	201,482	0	0	0	185,241	13,09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1,869,079	1,864,579	0	4,500	0	0	0	0	346,279
2021년도	542,497	542,394	0	0	0	0	0	103	143,064
2022년도	514,377	514,377	0	0	0	0	0	0	160,562
2023년도	392,603	308,895	0	0	0	0	0	83,708	△75,969
2024년도	431,526	431,526	0	0	0	0	0	0	△110,665
2025년도	502,240	502,240	0	0	0	0	0	0	△181,280
2026년도	504,240	504,240	0	0	0	0	0	0	△494,240
계	4,756,562	4,668,251	0	4,500	0	0	0	83,811	△212,249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445,268	495,993	1,753	△494,240	
예치금	소계	445,268	495,993	1,753	△494,240	
	신한은행	445,268	495,993	1,753	△494,240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5. 9. 18.]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994호, 2025. 9. 18.,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건축과), 033-250-31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춘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개정 2015.12.31., 2017.9.28.>

② 기금은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9.28.>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7.9.28.>

1.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
2. 경관개선에 관한 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5.12.31.>
2.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삭제<2015.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9.18.>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0조 삭제<2015.12.31.>

제11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개정 2025.9.18.>

제12조 삭제<2017.9.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

금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건축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설치목적 :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 (3) 설치년도 : 2002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종합청사 건립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 청사건립을 위한 자금 적립
 - 행정서비스 제고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 건립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㉑ + ㉓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1,103,968	883	859,000	△858,117	245,85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㉑+㉒-㉓
245,851	0	0	245,851

- (2) 재원조성 :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 (3) 지원기준 :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4) 지원대상 :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104,851	4,821,439	△3,716,588	합 계	1,104,851	4,821,439	△3,716,588
전 입 금	0	3,930,000	△3,930,000	비용자성사업비	859,000	3,930,000	△3,071,000
보 조 금	0	0	0	용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용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1,103,968	890,727	213,241	예 치 금	245,851	891,439	△645,588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883	712	171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883	712	171	
210 경상적세외수입	883	712	171	
216 이자수입	883	712	17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83	712	171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883,000원 = 883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3,968	4,820,727	△3,716,759	
710 보전수입등	1,103,968	890,727	213,241	
714 예치금회수	1,103,968	890,727	213,241	
714-01 예치금회수	1,103,968	890,727	213,241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1,103,968,000원 = 1,103,968
수 입 합 계	1,104,851	4,821,439	△3,716,588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87,482,835	67,800,000	240,000	0	0	0	19,387,123	55,712
2021년도	3,435,698	3,000,000	240,000	0	0	0	195,698	0
2022년도	959,255	0	642,000	0	0	0	184,452	132,803
2023년도	4,399,360	4,000,000	290,000	0	0	0	109,360	0
2024년도	9,224,447	9,170,000	0	0	0	0	54,447	0
2025년도	3,930,712	3,930,000	0	0	0	0	712	0
2026년도	883	0	0	0	0	0	883	0
계	109,433,190	87,900,000	1,412,000	0	0	0	19,932,675	188,515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①-②
	계②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99,930,274	99,930,274	0	0	0	0	0	0	△ 12,447,439
2021년도	7,241,656	7,241,656	0	0	0	0	0	0	△3,805,958
2022년도	2,228,141	2,228,141	0	0	0	0	0	0	△1,268,886
2023년도	8,722,852	8,722,852	0	0	0	0	0	0	△4,323,492
2024년도	12,446,455	12,446,455	0	0	0	0	0	0	△3,222,008
2025년도	4,337,559	4,333,000	0	0	0	0	0	4,559	△406,847
2026년도	859,000	859,000	0	0	0	0	0	0	△858,117
계	135,765,937	135,761,378	0	0	0	0	0	4,559	△ 26,332,747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890,727	1,103,968	245,851	△858,117	
예치금	소계	890,727	1,103,968	245,851	△858,117	
	신한은행	890,727	1,103,968	245,851	△858,117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5. 3. 6.]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946호, 2025. 3. 6.,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건축과), 033-250-31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5.3.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9.3.7]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8.11.9., 2023.11.16.>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개정 2019.3.7>
2. 교부금,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개정 2020.11.5.>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
2. 설계용역 및 건축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개정 2020.11.5.>
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5.6.16., 2020.11.5.>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5., 2025.3.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금업무 담당 국장·과장

2. 위촉직

가.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6.]

제8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6.]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3.6.]

제8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3.6.]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11.16.>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1.5., 2023.11.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④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부칙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588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30>

제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목개정 2013.12.30]

①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3.12.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국장<개정 2013.12.3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과장<개정 2013.12.30>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신설 2013.12.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자료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4조 <삭제 2013.12.30>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발전기금



농업정책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농업발전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2) 설치목적 : 농업인 경쟁력 확보 및 소득향상
- (3) 설치년도 : 2002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농업경영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향상 도모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
 - 단기 농축산 경영자금 및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청년창업형 후계농) 이자 보전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㉑ + ㉓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7,136,307	337,286	620,117	△282,831	6,853,47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융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 = ㉑ + ㉒ - ㉓
6,853,476	0	0	6,853,476

(2)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450,000천원 (도비 24%, 시비 76%/농협조합원은 해당농협에서 20%)

○ 영농자금이자 이차보전 지원: 250백만원(단기영농자금 원금의 1.2%,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대상자의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원금의 1.2%)

○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3,450천원

(4) 지원대상 : ○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춘천시 농업인 15,000여명

○ 영농자금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자

- 단기 영농자금이자 이차보전: '22년 12월~'23년 11월까지 영농자금을 융자받아 '23년 12월~'24년 11월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농업인

- 청년농업인 창업자금이자 이차보전: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원금의 1.2% (거치기간만 지원/5년)

○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 수당, 위원회 운영비 등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농업발전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973,593	1,961,885	11,708	합 계	1,973,593	1,961,885	11,708
전 입 금	0	0	0	비용자성사업비	620,117	456,915	163,202
보 조 금	110,000	48,832	61,168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1,200,000	0	1,200,000
예 치 금 회 수	1,636,307	1,677,407	△41,100	예 치 금	153,476	1,504,970	△1,351,494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27,286	235,646	△8,36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농업발전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8,360	8,36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8,360	8,360	0	
216 이자수입	8,360	8,36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360	8,360	0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8,360,000원 = 8,360
500 보조금	110,000	48,832	61,168	
520 시·도비보조금등	110,000	48,832	61,168	
521 시·도비보조금등	110,000	48,832	61,168	
521-01 시·도비보조금등	110,000	48,832	61,168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110,000,000원 = 11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55,233	1,904,693	△49,460	
710 보전수입등	1,636,307	1,677,407	△41,100	
714 예치금회수	1,636,307	1,677,407	△41,100	
714-01 예치금회수	1,636,307	1,677,407	△41,100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1,636,307,000원 = 1,636,307
720 내부거래	218,926	227,286	△8,360	
722 예탁금및예수금	218,926	227,286	△8,36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18,926	227,286	△8,3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 정) 예탁금 218,926,000원 = 218,926
수 입 합 계	1,973,593	1,961,885	11,708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농업발전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1,973,593	1,961,885	11,708
농업·농촌	1,973,593	1,961,885	11,708
미래농업 기반 강화	620,117	456,915	163,202
농업발전기금 운용(농업발전기금)	620,117	456,915	163,202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366,667	203,465	163,202
307 민간이전	366,667	203,465	163,202
06 보험금 366,667	366,667	203,465	163,202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366,667,000원 = 366,667			
[도 110,000]			
[시 256,667]			
영농자금이자 이차보전 지원	250,000	250,000	0
307 민간이전	250,000	250,000	0
08 이차보전금 250,000	250,000	250,000	0
○영농자금이자 이차보전 지원(1.2%) 250,000,000원 = 250,0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3,450	3,450	0
201 일반운영비	3,450	3,450	0
01 사무관리비 3,450	3,450	3,450	0
○심의위원회 수당 등 3,450,000원 = 3,450			
재무활동(농업정책과)	1,353,476	1,504,970	△151,494
내부거래지출(농업발전기금)	1,200,000	0	1,2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1,200,000	0	1,200,000
704 예탁금	1,200,000	0	1,200,000
01 예탁금 1,200,000	1,200,000	0	1,2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200,000,000원 = 1,200,000			
보전지출(농업발전기금)	153,476	1,504,970	△1,351,494
농업발전기금 예치	153,476	1,504,970	△1,351,494
602 예치금	153,476	1,504,970	△1,351,494
01 일반예치금 153,476	153,476	1,504,970	△1,351,494
○2026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153,476,000원 = 153,476			
지출합계	1,973,593	1,961,885	11,708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농업발전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13,545,607	0	86,585	0	9,787,000	0	3,669,624	2,398
2021년도	363,288	0	106,418	0	195,600	0	61,174	96
2022년도	2,031,032	0	107,355	0	1,630,535	0	73,881	219,261
2023년도	1,231,765	0	107,322	0	1,042,545	0	81,879	19
2024년도	1,288,686	0	111,394	0	971,661	0	205,631	0
2025년도	291,211	0	48,832	0	6,733	0	235,646	0
2026년도	337,286	0	110,000	0	0	0	227,286	0
계	19,088,875	0	677,906	0	13,634,074	0	4,555,121	221,774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농업발전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17,865,896	4,228,670	13,633,820	3,406	0	0	0	0	△4,320,289
2021년도	1,197,233	1,197,233	0	0	0	0	0	0	△833,945
2022년도	862,524	862,397	0	0	0	0	0	127	1,168,508
2023년도	497,280	496,979	0	0	0	0	0	301	734,485
2024년도	540,799	540,799	0	0	0	0	0	0	747,887
2025년도	456,915	456,915	0	0	0	0	0	0	△165,704
2026년도	620,117	620,117	0	0	0	0	0	0	△282,831
계	22,040,764	8,403,110	13,633,820	3,406	0	0	0	428	△2,951,889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농업발전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7,419,385	7,136,307	6,853,476	△282,831	
예치금	소계	1,919,385	1,636,307	153,476	△1,482,831	
	신한은행	1,919,385	1,636,307	153,476	△1,482,831	
예탁금	소계	5,500,000	5,500,000	6,700,000	1,200,000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5,500,000	5,500,000	6,700,000	1,200,000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8. 14.]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91호, 2024. 8.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향상을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농가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

-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3.,2021.11.11.>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춘천시의 출연금
2.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
3.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 지원
4. 춘천시 농축산자조금 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6조(기금 관리·운용)

-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4.8.14.>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9.10.>

1. 농정 및 축산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장
4.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8.14.>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기금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업무 대행)

① 제15조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융자 한도액, 융자대행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1.5., 2024.8.14.>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용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1.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17조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4. 30.]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634호, 2015. 4. 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지원 조건)

- ① 용자금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했던 용자금이 모두 회수되었을 경우 시행하며, 이 경우 연간 총 용자금은 전년도 기금 결산액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은 용자금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용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용자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천만원으로, 농업법인의 경우 5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용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조(용자금 상환 등)

- ① 용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용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다음달 10일 이내로 한다.
- ② 용자금 원금을 상환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용자업무 대행)


-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용자금 지원사업을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자대행수수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용자금의 이율로 한다.
- ② 용자금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용자금 지원실적과 원금 내역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원된 용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진흥기금



식품의약과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총당 및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 (3) 설치년도 : 2001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1) 기금사업의 목표 :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2)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및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지원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㉒ = ㉑ + ㉓	비 고
	수입 ㉔	지출 ㉕	증감 ㉖ = ㉔ - ㉕		
288,466	109,500	98,380	11,120	299,586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㉑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	총 조성규모 ㉔ = ㉑ + ㉒ - ㉓
299,586	0	0	299,586

(2) 재원조성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지원대상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모범, 으뜸음식점 등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97,966	333,313	64,653	합 계	397,966	333,313	64,653
전 입 금	0	0	0	비용자성사업비	98,380	109,660	△11,280
보 조 금	57,100	63,400	△6,30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200,000	0	200,000
예 치 금 회 수	288,466	227,513	60,953	예 치 금	99,586	223,653	△124,067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400	2,4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50,000	40,000	10,000	전 출 금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52,400	42,400	1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400	2,400	0	
216 이자수입	2,400	2,4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400	2,400	0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400,000원 = 2,400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000	40,000	10,000	
231 과징금	50,000	40,000	10,000	
231-01 과징금	50,000	40,000	10,000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50,000,000원 = 50,000
500 보조금	57,100	63,400	△6,300	
520 시·도비보조금등	57,100	63,400	△6,300	
521 시·도비보조금등	57,100	63,400	△6,300	
521-01 시·도비보조금등	57,100	63,400	△6,300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57,100 ○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37,100,000원 = 37,1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비 지원 20,000,000원 = 2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8,466	227,513	60,953	
710 보전수입등	288,466	227,513	60,953	
714 예치금회수	288,466	227,513	60,953	
714-01 예치금회수	288,466	227,513	60,953	
				○2025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288,466,000원 = 288,466
수 입 합 계	397,966	333,313	64,653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0,000,000원 = 200,000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99,586	223,653	△124,067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99,586	223,653	△124,067
602 예치금	99,586	223,653	△124,067
01 일반예치금 99,586	99,586	223,653	△124,067
○2026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 99,586,000원 = 99,586			
지 출 합 계	397,966	333,313	64,653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조성액							
	계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 까지	1,138,404	0	488,430	0	0	0	91,027	558,947
2021년도	110,275	0	61,900	0	0	0	2,955	45,420
2022년도	123,766	0	66,400	0	0	0	3,276	54,090
2023년도	99,330	0	67,500	0	0	0	1,618	30,212
2024년도	119,608	0	63,400	0	0	0	2,286	53,922
2025년도	155,800	0	63,400	0	0	0	2,400	90,000
2026년도	109,500	0	57,100	0	0	0	2,400	50,000
계	1,856,683	0	868,130	0	0	0	105,962	882,591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연도별	집행액								잔액 ㉠-㉡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전출금	기타지출	
2020년 까지	1,129,917	979,391	0	147,758	0	0	0	2,768	8,487
2021년도	119,321	116,371	0	0	0	0	0	2,950	△9,046
2022년도	118,645	118,379	0	0	0	0	0	266	5,121
2023년도	111,686	111,070	0	0	0	0	0	616	△12,356
2024년도	100,547	95,111	0	0	0	0	0	5,436	19,061
2025년도	125,804	117,760	0	0	0	0	0	8,044	29,996
2026년도	98,380	98,380	0	0	0	0	0	0	11,120
계	1,804,300	1,636,462	0	147,758	0	0	0	20,080	52,383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6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4년도말현재액	2025년도말현재액 ^㉔	2026년도말현재액 ^㉕	증감(㉕-㉔)	
합계		258,470	288,466	299,586	11,120	
예치금	소계	258,470	288,466	99,586	△188,880	
	신한은행	258,470	288,466	99,586	△188,880	
예탁금	소계	0	0	200,000	200,000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0	0	200,000	200,000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5. 9. 18.]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994호, 2025. 9. 18.,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식품의약과), 033-250-4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개정 2025.9.18.>

③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9.18.>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용자업무 위탁)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용자 상환조건 및 용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9. 18.]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935호, 2025. 9. 18.,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식품의약과), 033-250-4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용자업무 위탁)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용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자대행 수수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용자 금리로 한다.

제4조(용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용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용자대상 선정) ① 시장은 기금 용자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자대상이 선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용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용자대상 선정 후 용자 신청금액이 용자 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용자대상 업소별로 용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용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나. 모범음식점: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정한다), 휴게음식점: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 제조·가공업소: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용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용자할 수 있다.

제7조(용자 상환조건) ① 용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용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금을 받은 경우

③ 시설개선자금의 용자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9.18.>

④ 그 밖에 용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용자제외 대상) 용자제외 대상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업소
2. 휴업·폐업중인 업소
3.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보고·검사)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모범음식점 지원) 시장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한다). 이 경우 업소당 지원금액은 월 20만원 이하로 한다.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화장실 비품 등 지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